

「구미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장미경 의원

2. 찬 성 자 : 강승수 의원 외 12인

3. 제안이유

- 구미시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 받고 보다 나은 삶을 누리며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청소년의 날을 제정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1조~제2조)
- 청소년의 날과 청소년 주간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- 청소년의 날 행사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- 입장료 등 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
5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

- 「청소년 기본법」 제3조, 제16조
-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제3조
- 「청소년활동 진흥법」 제32조
- 「청소년 기본법 시행령」 제17조
- 「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」 제1조의2
- 「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」 제17조
- 「구미시 청소년 기본 조례」 제8조

○ 부서검토: 교육청소년과 의견제출

○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6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구미시 청소년이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청소년의 날을 제정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기 위한 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청소년의 날과 각종 행사·홍보, 시설 이용료 감면 등 다양한 지원 내용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문화·교육 이용여건을 개선하며 사회참여 기회를 넓히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. 또한 기념일을 법적으로 분명히 설정하여 청소년정책 추진의 상징성과 일관성을 강화하는 효과가 기대됨.
- 집행기관에서는 청소년의 날 운영이 단순 기념행사에 그치지 않도록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을 실제 수요 중심으로 기획하고, 학교·지역사회·청소년단체와의 연계 체계를 강화하여 실효성 있는 청소년 정책이 추진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.